

직원인사규칙

1997. 3. 1 제정
1999. 3. 1 개정
2002. 3. 1 개정
2004. 8. 27 개정
2008. 4. 29 개정
2009. 4. 28 개정
2016. 6. 29 개정
2018. 2. 2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새빛학원 직원의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직원인사 행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새빛학원 정관 제93조에서 정하는 일반직, 기술직에
게 적용한다.

제3조 (직급) ①일반직은 10급부터 4급까지로 하며, 기술직은 9급으로 한다.

제4조 (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5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형사피소 또는 이 규칙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휴직, 감봉, 기타
불리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임 용

제6조 (신규임용) 일반직원의 임용은 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7조 (임용 절차) ①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의 결재로서 행한다.

②직원의 신규채용시에는 별표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임용시기) 직원은 발령장 또는 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
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정원) ①직원의 정원은 정관으로 한다.

②직원은 기구 개편이 없는 한 증원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정규 직원
(계약직,임시직,무기계약직 이하 “비정규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비정규 직원은 직원정원에 관계없이 실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계속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되 1개월 전에 해당 직원에게 해임 통고를 하여야 한다.

④비정규 직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임용기준) 직원은 흠결이 없는 기독교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에 따른 능력·기술 및 자질 등을 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형하고, 근무 실적 등을 참작하여 직급 및 호봉을 산정한다.

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8. 본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

제12조 (신규임용자의 기본직급 및 호봉) ①직원의 신규임용시 기본직급과 호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학 력 구 분		
	대학 졸업	전문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일반직, 기술직	9급 4호봉	9급 3호봉	9급 1호봉

②직원 신규 임용시에는 일반직 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16에 의해 환산하여 호봉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승진) ①승진은 직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직무연수, 직무능력, 기관에 대한 기여도, 근무상황 등에 의한다.

②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는 승진되는 하위 직급에서 7급까지는 3년, 7급이상은 4년이상 근무한 자라야 한다.

제14조 (승급) ①직원의 승급은 1년에 1호봉씩 승급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며, 그 시기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승급 될 수 없다.

제15조 (승진제청) 직원의 승진은 기관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행한다.

제16조 (보직) ①보직이라 함은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면은 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보직은 적재적소를 원칙적으로 하며, 각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에 부합되는 급호 또는 특기에 의하여 적격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보) 직원의 전보는 직제와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이동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대학·유치원 동일 직급간 상호 교류할 수 있다.

제 3 장 직 원 인 사 위 원 회

제18조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①학교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법인인사위원회는 법인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19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학교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및 직원으로 조직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20조 (인사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일반직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2. 일반직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보 수

제21조 (보수결정원칙) ①직원의 보수는 공무원의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준용하며, 일반 표준생계비·민간 임금·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정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대학의 경우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6급이하 57세이상 직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며, 임금 감액률 및 적용시기등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22조 (보수지급일자) 보수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3조 (상여금) 정규직원에 한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4조 (수습기간) 직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적성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수습기간 중 봉급(본봉, 연구보조비)은 80%를 지급한다.

제 5 장 표 창

제25조 (표창구분) ①표창은 근속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한다.

②표창은 개교기념일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표창사유) 직원 표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학원발전에 뚜렷한 업적이 있을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
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제27조 (표창의 결정 및 실시방법) ①표창은 기관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표창은 이사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8조 (표창 수여자의 특전) 표창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동순위에 있어서의 승진의 우선
2. 특별승급 또는 특별상여금의 지급
3. 특별휴가
4.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제29조 (근속상) ①근속상은 10년 근속, 20년 근속, 3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근속기간 산출은 초임연월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매년 3월 5일까지로 한다.

③공로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공로상) 공로상은 새빛학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직원에게 수여한다.

제 6 장 징 계

제31조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관계규정을 위반하거나 새빛학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의 명예 또는 재산에 손상을 끼쳤을 때

3.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2조 (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관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3조 (변상책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지며, 변상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정보증인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용된 자와 직원인사규정에 의해 임용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